의 안 번 호	제47호
의결 연월일	2022. 4. 21.

논산시 산업재해 예방 및 노동안전보건 지원 조례안

심사보고서

1. 심사경과

가. 제안일자, 제안자 : 2022년 04월 13일, 최정숙 의원 외 2명

나. 회 부 일 자 : 2022년 04월 13일

다. 상 정 일 자 : 2022년 04월 21일 제1차 산업건설위원회

2. 제안설명요지(제안 설명자 : 최정숙 의원)

가. 제안이유

○ 2021. 5. 18. 「산업안전보건법」개정으로 지방자치단체의 책무 및 산업재해 예방활동 규정이 신설됨에 따라 논산시에서 발생하는 산업재해를 예방하고 노동 안전보건을 강화하는데 필요한 사항을 정함으로써 노동자의 안전과 보건을 증진시키는데 기여하고자 이 조례를 제정하고자 함.

나. 주요내용

- 조례 제정의 목적 및 용어 정의 규정(안 제1조, 제2조)
- O 산업재해 예방 실행계획 수립 규정(안 제5조)
 - 산업재해 예방 등에 대한 정책의 기본방향
 - 산업재해 발생현황 및 지역·업종별 실태 자료수집 및 분석
 - 산업재해 예방 및 감소를 위한 지역·업종별 대책
 - 사업주 및 노동자에 대한 노동안전보건 교육 및 홍보
 - 산업재해 예방 및 노동안전보건 사업에 필요한 예산

- O 산업재해예방 활동 등 규정(안 제6조)
 - 사업주 및 노동자 안전보건교육
 - 사업장 안전수칙 준수 문화조성 등 산업재해 예방 홍보
 - 사업장 노동안전보건 자체 점검 지원
 - 산업재해 실태 및 개선방안에 관한 조사 · 연구
- O 산업안전보건 위원회의 설치 및 운영 등(안 제8조~제16조)
- 3. 전문위원 검토보고 요지 : 생 략
- 4. 질의 및 답변요지: 생략
- 5. 토론요지: 생략
- 6. 심사결과 : 원안가결